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전 기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법률 제17535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일부개정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7. ~ 2021. 1. 18.)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수급자등록사항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급자등록사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
- 라.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4. 국가보훈처장 또는 보훈지방청의 장에게 요청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국가유공자등록자료
 5. 국가보훈처장 또는 보훈지방청의 장에게 요청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장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5·18 민주유공자등록자료
 6. 국가보훈처장 또는 보훈지방청의 장에게 요청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의 독립유공자등록자료
 7.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허가내역 등 관련 자료
 8.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3(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사항</u> <u>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수급자등록사항</u> <u>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u>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급자등록사
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
여를 받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 별표2 제3호라목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
받는 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
당을 지급받는 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
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
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4. 국가보훈처장 또는 보훈지방
청의 장에게 요청하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로
서 상이등급이 1급부터 3급까

지에 해당하는 자의 국가유공
자등록자료

5. 국가보훈처장 또는 보훈지방
청의 장에게 요청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장해등
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
하는 자의 5·18 민주유공자
등록자료

6. 국가보훈처장 또는 보훈지방
청의 장에게 요청하는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해당하는 자의 독립유
공자등록자료

7.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사
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허가
내역 등 관련 자료

8.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주민등
록자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연 락 처	(044) 203 - 5175